



금산군의회
GEUMSAN COUNTY COUNCIL

2026. 4. 21.(화)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 제33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

의안 검토보고서

검토안건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금성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46호
- 제 출 자 : 금산군수
- 제 출 일 : 2026. 4. 13.
- 회 부 일 : 2026. 4. 13.

2.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상향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신청 가능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선정대리인 신청 기준 금액 상향 조정(안 제9조제1항)
 - 신청기준금액* : (현행) 1천만원 → (개정) 2천만원
 - * 신청기준금액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및 이의신청 금액
- 상위법령 인용조항 수정 및 기타 용어 정비(안 제9조제3항 및 제5항)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제5항 및 제6항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고
- 기타
 -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 해당없음(기획예산과-3031)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기획예산과-3029)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가족정책과-8377)
- 입법예고(2026. 2. 20. ~ 2026. 3. 12.) : 제출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신청 가능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경제적 취약계층인 영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9조제1항에서는 선정대리인 신청 기준 금액을 기존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음. 이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제5항에서 규정한 금액 기준과 일치시키려는 조치로,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불복 청구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돕고 권익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안 제9조제3항 및 제5항에서는 상위법령 인용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였음. 이는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오류를 바로잡고 행정적 정확성을 기하여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마지막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준을 현실화하고 영세 납세자의 구제 기회를 넓히려는 목적으로서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다만, 신청 기준 상향으로 인해 선정대리인 신청 건수 및 연평균 약 1백만원 정도의 관련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안 제10조제4항에 따른 실비변상적 수당 지급 등 지원 체계가 원활히 작동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

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